

[참고자료1]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4조(자격기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4조(채용자격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2, 별표2-1과 같다.

[별표 2]

교직원 채용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대학 교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해당 분야의 산업체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교과특성상 산업체 현장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체 현장실무경력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별표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별표] <개정 2019. 6. 11.>(고등교육법 제16조 관련)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연구·교육 경력연수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지원분야 학위취득후 경력연수)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지원분야 학위취득후 경력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직명						
조교수	2	2	4	3	4	7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경력연수는 학위 취득이후의 근무연수)

[별표 2-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별표 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

조교수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 경력연수(經歷年數)는 명장(名匠)·기능전승자 선정일, 자격취득일 및 국제기능 올림픽 입상일 이후의 근무연수를 말한다.
- 산업체 현장 근무경력에는 자영업 영위기간을 포함한다.